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8.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059호	문정복의원	2025.6.25.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6.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1123호	서영교의원	2025.6.27.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 회부 (2025.7.7.)

나.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7. 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 7. 8.)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 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

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